여수시도시관리공단 공고 제2021 - 13호

장애인국민체육센터 이용수칙

제1장 회원등록

제1조(목적)

본 이용수칙은 여수시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목욕시설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

①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의 회원구분은 일반회원과 감면회원으로 구분하며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에 대한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 : 여수 시민으로 등록된 모든 장애인
2. 감면회원 : 여수 시민으로 등록된 모든 장애인중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영유아에 해당되는 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가하거나 제14조(회원자격 박탈 및 출입제한)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원 자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3조(회원가입신청)

체육센터를 이용하는 회원은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시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회원가입 신청은 공단에서 지정한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반드시 복지카드를 지참해야 한다.
2.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시 이용수칙 서약서에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회원가입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고의 또는 부주의로 누락하거나 변경된 연락처를 안내데스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불이익은 작성자(회원)에게 있다.
4. 회원가입 신청서 제출 시 가족탕 이용 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동반가족은 신분증을 제시 하여야 한다. 단, 동성이 이용할 경우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이용료)

1. 이용료는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2. 체육시설 이용료는 무료이고 장애인전용목욕탕 이용료는 일반회원 2,000원, 감면회원 1,000원이다.
3. 결제한 요금을 취소할 경우 현금은 현장에서 즉시 환불되고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취소한 날로부터 약 일주일 뒤에 해당카드로 요금이 전액 반환된다.

제2장 운영 및 임시휴장

제5조(운영 및 임시휴장)

① 장애인국민체육센터의 운영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고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21:00까지이다.

1.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요일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이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이용대상	오 전	오 후
대중탕	모든 장애인	10:00 ~ 12:00	13:00 ~ 17:00
가족탕	중증 장애인, 하지 절단 장애인	10:00 ~ 11:30 (사전예약제)	14:00 ~ 15:30 (사전예약제)

2. 체육시설 운영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시 설 명	운영시간	비 고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09:00~21:00	
	체력측정실	09:00~18:00	
	체력단련실	09:00~21:00	
	당 구 장	09:00~18:00	

② 정기휴장은 법정 공휴일 및 대체휴무일, 근로자의 날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③ 체육센터는 다음의 경우에 임시휴장을 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및 사유를 홈페이지 및 현장에 게시 및 문자메시지로 공지한다.

1.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체육대회 등 공식행사 개최 시
3. 시설의 보수, 보강, 기타 운영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제3장 목욕시설 이용 준수사항

제6조(이용자 준수사항)

장애인전용목욕탕(이하 “목욕탕”) 이용 시 지켜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입실 전 고열·고혈압·고혈당·전염성 질환·유해성 질환 등을 담당자에게 고지하고 혈압 체크에 협조해야 한다.
2. 허가된 목욕시간을 엄수하고 개인 건강상태에 맞추어 이용하여야 한다.
3. 목욕탕 이용 시 헤어드라이기·캐비닛·샤워용 휠체어 등 체육센터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파손 등 부주의 없이 깔끔하게 사용해야 한다.
4. 중증 이용자는 목욕탕 이용 시 항상 보호자(보조자)와 함께 활동하여야 한다.
5. 만4세 이상 어린이는 남 · 여탕을 구분하여 입장하여야 한다.
6. 이용 후에는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7. 미끄럼 등 안전에 주의하고, 목욕용품과 물 사용 절약에 협조하여야 한다.
8. 목욕탕 내부로는 외부음식물(달걀, 우유 등)을 절대 반입할 수 없다.
9. 시설, 기구, 용품은 본래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용 하여야 한다.
10. 음주 시에는 입실이 불가능하다.
11.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12. 목욕탕 내 마사지, 염색, 빨래, 이발 등의 행위를 금지한다.
13. 안내데스크에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은 분실 시 체육센터에 책임지지 않는다.
14. 가족탕은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며 특정 요일이나 시간을 독점할 수 없다.

제7조(라커 사용)

1. 목욕탕에 입실하는 회원들은 일인당 한 칸의 개인 라커의 사용이 가능하며 안내데스크에서 지급해주는 열쇠를 수령하여 입실한다.
2. 라커를 모두 사용 중일 경우 이용자는 퇴실인원이 있을 때까지 대기한다.
3. 이용자는 목욕탕 이용 후 라커에 개인 샤워용품을 보관해서는 안 되며 퇴실 시 본인이 직접 가져가야 한다.
4. 퇴실 시 개인사물함 열쇠를 반드시 반납해야하고 분실한 경우 이를 즉시 안내데스크에 알려야 한다.

제4장 체육시설 이용 준수사항

제8조(공통 준수사항)

체육시설 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에 배치된 체육활동 기구·용품들은 체육센터의 재산이므로 가져가거나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한다.
2. 이용자는 운동화, 운동복을 개인이 소지하여 이용하여야 한다.
3. 샤워장의 이용은 체육활동을 실시한 인원에게만 해당되며 이용 시 운동관리사 또는 사무실 직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시설을 이용한다.
4. 단독 활동이 불가능한 장애를 가진 이용자는 보호자를 꼭 동행하여야 한다.
5. 음식물 반입, 구두착용, 반려동물 동반 출입은 금지한다.(안내견은 제외)
6. 시설독점·소음 등으로 주변 회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행위를 금지한다.
7. 이용수칙을 무시하고 발생한 부주의, 지병, 고의과실로 인한 피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8. 이용 중 분실한 개인물품은 장애인국민체육센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9. 모든 체육활동 용품·기구들은 사용 후 정리정돈을 실시한다.

제9조(다목적체육관 준수사항)

1.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2. 프로그램 수업시간 중복을 피하기 위해 앞뒤 30분 이상의 간격을 둔다.
3. 개설된 프로그램에 시간적 제약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회원은 체육센터 직원의 이용안내를 받는다.
4. 물품창고를 사용 시 사무실에 허가를 받고 보관해둔 개인 운동용품들은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
5. 탁구대·배드민턴 코트·슐런·보치아 등 고정적으로 설치된 기구들은 임의로 위치를 옮기지 않는다.
6. 9조5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된 기구들의 이동이 필요할 경우 체육센터 사무실에 문의한다.
7. 방송실, 감독실은 장비의 조작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한다.
8. 관람석의 이용 시 의자를 밟고 올라 서는 등의 행위를 않는다.
9. 뛰거나 소리치는 행위를 통해 다른 회원들의 이용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

제10조(체력측정실 이용 준수사항)

1. 신체 건강 및 기초체력을 측정하는 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2. 지정된 이용시간을 초과하거나 측정 이외의 사용을 금지한다.
3. 체력측정실이 “상담중”으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 함부로 입실하지 않는다.
4. 체력측정실의 모든 장비들을 임의 조작하거나 만지지 않는다.
5. 기본 순서는 체성분분석, 말초혈관측정, 체력측정이며 측정이 끝날 때까지 운동처방사의 안내에 따른다.

제11조(체력단련실 이용 준수사항)

1. 체력단련실 운동지도사는 09:00부터 18:00까지 상주해 있으며 개인 체육활동 외 다른 행동은 금지한다.
2. 신발장 라커는 개인당 1개씩 지급되며 열쇠는 분실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3. 유산소 및 근력운동을 실시할 때 본인의 신체조건에 맞게 조절하며 특히, 근력운동을 할 경우 운동지도사의 지도를 받아 안전하게 실시한다.
4. 모든 운동용품·운동기구는 사용 후 제자리에 놓는다.
5. 체육활동이 끝나고 3층 샤워장을 이용할 경우 운동지도사에게 샤워장 라커 열쇠를 받아 입실하고 퇴실 시 정리정돈을 실시 후 열쇠는 반납한다.

제12조(당구장 이용 준수사항)

1. 당구대는 훼손하거나 필요 외 조작을 하지 않는다.
2. 이용 후 퇴실 시 정리정돈을 깔끔하게 하며 온열장치를 반드시 종료한다.
3. 당구 큐대를 높이 들어 당구대를 내려찍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
4. 초크나 당구 큐대 관리 소홀로 벽이나 바닥에 초크가 묻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5장 다목적체육관 대관 준수사항

제13조(대관 이용자 준수사항)

1. 대관 이용료는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
2. 대관의 우선권은 장애인 체육행사, 국가·도·시 단위 체육행사에 주어진다.
3. 대관을 희망하는 모든 기관·클럽·단체는 반드시 체육시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4. 대관신청은 최소 일주일 이전에 완료 되어야하며 일주일 이내에 신청한 대관은 성사되지 않는다.
5. 대관료의 입금은 대관 전날까지 완료되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 대관이 취소 될 수 있다.

6. 체육관 외에 기타 시설에 출입하거나 체육센터의 재산을 훼손하지 않는다.
7. 지정된 이용시간을 특정사유 없이 초과하거나 배정된 종목 이외에 사용하지 않는다.
8. 다목적체육관에 음식물, 음료 등 반입을 금지한다.
9. 사전에 통보한 인원과 현장인원이 다를 경우 인원수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제6장 기 타

제14조(출입제한 및 회원자격 박탈)

① 다음의 경우는 체육센터 출입을 제한한다.

1. 취중에 있는 자와 시설 내 소란과 위해가 염려되는 자
2. 용변의 배설이 불편하여 상습적으로 목욕탕, 화장실 바닥에 용변을 배출하는 자
3. 기타 시설물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의 출입제한 또는 회원자격이 박탈된 자

② 다음의 경우에는 체육센터에서 강제 퇴장시키거나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1. 화장을 지우지 않았거나 오일, 염색약을 바르고 목욕탕에 입실하는 경우
2. 기타 광범위한 피부질환, 건강상 이용이 불가한 자로 판단될 경우
3. 목욕탕·체육관을 허가 없이 개인이 임의대로 단체 이용하는 자
4. 특정 라커, 샤워부스 등 위치를 독점하는 행위로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자
5. 시설 이용자 상호간의 상행위 또는 금전거출 행위를 하는 자
6. 시설물관리원 또는 안전근무자의 지시에 불응한 자

제15조(손해배상)

1. 체육센터 내 본인 부주의에 따른 시설물 파손, 훼손 등은 행위자가 배상 하여야 한다.
2. 회원의 귀중품 또는 개인 휴대용품에 대해서는 철저한 본인 관리에 있으며 만약 분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체육센터가 책임질 수 없다. 단, 귀중품의 경우 안내데스크에 보관 가능하다.
3. 개인사물함의 열쇠를 분실 및 파손한 경우 교체비용은 분실자가 부담한다.
4. 체육센터 건물 내 시설물에 의해 이용자가 신체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체육센터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또는 그 손해의 발생이 사용자의 부주의, 지병, 고의과실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5. 시설물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체육센터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배상의 범위는 여수시 영조물 배상책임에 근거한다.

제16조(분실물)

라커룸, 샤워장 등 체육센터 내 회원 식별이 불가능한 개인 분실물은 분실물 보관대에 일괄 비치하며, 비치 후 찾아가지 않고 1개월이 경과한 물품에 대해서는 체육센터에서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17조(고지)

체육센터는 본 이용수칙을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안내데스크 비치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본 이용수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관계법령 및 신의와 성실의 이용관행을 고려, 체육센터와 이용자가 합의하여 해결한다.

제19조(이용수칙의 효력 및 변경)

1. 본 이용수칙은 홈페이지 게재 또는 안내데스크에 약식 게시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2. 체육센터는 필요한 경우 본 수칙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수칙은 1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한다.
3. 이용자는 이용수칙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등록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본 이용수칙은 2021. 02. 03. 부터 시행한다.